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6-30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4누567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
원고, 피항소인	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
피고, 항소인	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14. 7. 4. 선고 2014구합20454 판결
변 론 종 결	2014. 11. 14.
판 결 선 고	201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'농어촌특별세 80,812,080원'을 '농어촌특별세 80,813,080원'으로 경정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3. 12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08,130,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80,813,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(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농어촌특별세 80,812,080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6-30

은 80,813,080원의 오기로 보인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5행의 '주택분양보증약관'을 '주택분양보증약관(갑 제2호증의 2)'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7행의 '입주금의 나부중'을 '입주금의 납부중'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인정근거에 '을 제4호증'을 삭제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7행의 '2013. 10. 28.'을 '2008. 12. 23.'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 및 제9쪽 제12행의 각 '지방세법'을 각 '구 지방세법'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'성문인터네셔날'을 '성문인터내셔날'로 고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'농어촌특별세 80,812,080원'은 '농어촌특별세 80,813,080원'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6-30

재판장 판사 사공영진

판사 채 정 선

판사 박 정 대